사범대 학생회칙

 2011년
 5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18일
 개정

 2015년
 3월
 20일
 개정

 2019년
 9월
 25일
 개정

 2019년
 9월
 10일
 개정

 2021년
 3월
 4일
 개정

 2022년
 3월
 3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교육개혁과 사회진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 회원 간의 진보적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대학의 완전한 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회는 교육학과/시작이반, 국어교육과, 독어교육과/불꽃반, 물리교육과/햇반, 불어교육과/장미반, 사회교육과/우리반, 생물교육과/생동반, 수학교육과, 역사교육과/불패반, 영어교육과/태풍반, 윤리교육과/하나반, 지구과학교육과/나침반, 지리교육과/막강반, 체육교육과, 화학교육과/나눔반 학생회, 사범대 동아리 연합회로 구성한다. <개정 2019. 3. 25.>

제3조의 2 (의결) <신설 2014. 9. 18.>

-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단대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의 순서로 한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 및 학내외 위기상황과 이에 준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상 직권이 허용된다. 단, 학생회장은 비상 직권 사용 후 단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31.>
- 제4조 (기구) 본회는 학생총회, 단대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3. 25.>

제4조의 2 (특별기구) <신설 2014. 9. 18.>

- ① 사범대 학생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단기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③ 특별기구는 운영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 의결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 3. 25.>
 - 1. 명칭
 - 2. 목적
 - 3. 구성
 - 4. 의결
 - 5. 권한
 - 6. 사범대 학생회 기구와의 관계

제5조 (권한)

- ① 본회는 회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 ② 본회는 회원들의 합의와 동의의 과정에서 사업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의 2 (학교 당국과의 관계) <개정 2019. 3. 25.> 본회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개정 2014. 9. 18.>

- ①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의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한다.
- ② 삭제 <2014. 9. 18.>

제7조 (권리) <개정 2014. 9. 18.>

- ①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제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 ④ 휴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휴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 1. 운영위원
 -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 3.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 <개정 2014. 9. 18.>

제7조의 2 (회원권의 복권) <신설 2017. 9. 25.>

- ① 학교 당국의 징계로 회원권 자격이 박탈된 자는 운영위원회에 회원권의 복권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2. 3. 31.>
- ② 1항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학생회장은 즉시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여 야 한다. 운영위원회 출석위원 2/3 이상의 반대가 있을 시 불승인 안건을 단학대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 아니면 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권의 복권을 승인한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2. 3. 31.>

- ③ 복권 요청 시점부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시점까지 휴학생에 준하는 회원권을 임시로 부여한다. <개정 2019. 3. 25.>
- ④ 복권된 회원권은 휴학생의 회원권에 준하며, 회원권의 유지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제8조 (의무) <개정 2014. 9. 18.>

- ①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3. 31.>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민주적으로 결정한 사상을 준수하고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3. 31.>
 - ③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22. 3. 31.>

제3장 학생총회

제9조 (지위) 학생총회는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 (구성)

-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② 학생총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11조 (소집) <개정 2014. 9. 18.>

- ① 학생총회는 본회의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3. 31.>
- ② 단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은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9. 3. 25.>
- ③ 학생회장은 개회 10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총회가 열리지 못하면 총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9. 18.>

제11조의 2 (의안 발의) <신설 2014. 9. 18.>

- ① 단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원 1/10 이상의 회원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 ② 학생회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 3 (의결) <신설 2014, 9, 18.>

- ① 학생총회는 재적 회원 1/5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권한)

- ① 학생총회는 학생회 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 3. 31.>
 - ② 학생총회는 정·부 학생회장 또는 집행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 3. 31.>

제12조의 2 (총투표) <신설 2014. 9. 18.>

- ① 총투표는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총회를 대신하는 의결방식이다.
- ② 총투표의 의결은 총회의 의결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 ③ 총투표는 본회의 회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총투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단대 학생대표자회의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후 공표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제4장 단대 학생대표자회의

제13조 (지위) 단대 학생 대표자 회의(이하 단학대회)는 학생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

제14조 (구성) <개정 2014. 9. 18.>

- ① 단학대회는 직접선거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동아리 및 자치 단위 대표는 간접 선거에 의한 대표도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 1. 정·부학생회장
 - 2. 각 과/반 대표 1인 및 각 과/반 학년 대표 1인
 - 3. 동아리 및 자치 단위에서 선출된 대표 1인
- 4. 부가적으로 혹은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 권한을 갖는 대의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회 3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확정한다. <개정 2019. 3. 25.>
 - ② 단학대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제15조 (소집) <개정 2014, 9, 18,>

단학대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개정 2019. 3. 25.>

- ① 정기 단학대회는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 3. 25.>
- ② 임시 단학대회는 운영위원회의 1/3 이상의 동의를 거쳐서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 3, 31,>
 - ③ 단학대회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즉시 소집공고를 내야 한다.
- ④ 학생회장은 개회 7일 전까지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학생회장 직권 소집 때에는 사전 공고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설 2014. 9. 18.>

제16조 (안건 상정 및 의안 발의)

① 단학대회 안건 상정은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개회 3일 전까지 단학대회에 제안한다. <개정 2019. 3. 25.>

- ② 학생회칙 개정을 제외한 안건은 단학대회 재적 대의원 1/5 이상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까지 상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 ③ 안건에 대한 수정안, 이견안 등 문건으로 채택되어 선택표결까지 가능한 의안의 발의는 1, 2항의 내용을 따른다. 단, 의안의 발제 이후 더욱 풍부해지고 부분적으로 수정되는 의안 발의 등의 기타 의안 발의는 단학대회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9. 3. 25.>

제17조 (의결) <개정 2014. 9. 18.> 일반안건에 대하여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에 의하지 아니한 의결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8조 (업무 및 권한) <개정 2014. 9. 18.>

- ① 학생총회 소집 요구권
- ② 본회의 활동의 기본 방향에 대한 사항
- ③ 운영위원회 및 각 집행국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개정 2014. 9. 18.>
- ④ 학생회칙 개정 발의 및 의결권
- ⑤ 회원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사항
- ⑥ 학생회 예산 심의 및 의결권
- ⑦ 회의 진행에 필요할 시 운영위원회, 집행국에 대한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권 <개정 2014. 9. 18.>

제19조 (탄핵권) <개정 2014. 9. 18.>

- ① 단학대회는 재적 대의원 25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부 학생회장을 탄핵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 ② 단학대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집행위원장 및 각 집행국장을 탄핵할 수 있다.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은 바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18.> <개정 2022. 3. 31.>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 (지위) <개정 2014. 9. 18.> 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 및 단대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상설적으로 운영되는 운영기구이다.

제21조 (소집) <개정 2014. 9. 18.>

- ① 운영위원회는 매주 1회 학생회장이 소집하되, 필요에 따라 학생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8.>
 - ② 삭제 <2014. 9. 18.>
- ③ 운영위원의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개정 2014, 9, 18,>
 - ④ 학생회장은 운영위 소집 전 안건을 공지하여 운영위원들이 사전에 안건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4. 9. 18.>

제22조 (구성) <개정 2014. 9. 18.>

- ① 운영위원회는 직접선거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동아리연합회 대표는 간접 선거에 의한 대표도 운영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21. 3. 4.>
 - 1. 정.부학생회장
 - 2. 각 과/반 학생회장
 - 3, 동아리연합회장
 - ②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의 학생회장으로 한다.

제23조 (의결) <개정 2014. 9. 18.>

- ①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3. 25.>
 - ② 삭제 <2014. 9. 18.>
- ③ 제22조의 과/반 학생회장 또는 동아리연합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의장의 승인 아래 해당 기구의 부회장 1인에게 운영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임시로 위임할수 있다. <신설 2021. 3. 4.> <개정 2022. 3. 31.>

제24조 (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여 본회의 제반 중요한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최고 운영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22. 3. 31.>

- ① 단대학생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심의, 조정권
- ②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 ③ 단학대회의 소집 요구권
- ④ 집행위원장 및 집행국장의 임명 동의권 및 출석 요구권 <개정 2022. 3. 31.>
- ⑤ 집행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 <개정 2022. 3. 31.>
- ⑥ 특별기구 구성권
- ⑦ 학생회 예산 편성 및 결산 동의권
- ⑧ 학생회칙 개정 발의권
- ⑨ 학교 당국에 대한 교섭권

제6장 정·부학생회장

제25조 (정학생회장의 지위)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6조 (부학생회장의 지위) 정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정학생회장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7조 (선출) ① 정, 부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선거로 한다. <신설 2021. 3.

- ② 정, 부학생회장의 입후보는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여야 한다. <개정 2021. 3. 4.>
- ③ 입후보자 중 재적 회원 과반수 투표, 유효 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신설 2021. 3. 4.>
- ④ 재적 회원 과반수의 투표가 성사되지 못할 시 해당 사범대 학생회장 선거는 무산이며 제15장 69조의 절차에 따라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가 구성된다. <신설 2021. 3. 4.>

제28조 (임기)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선거 시기에 따라 단학대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1. 3. 4.>

제29조 (신분보장) 정, 부학생회장은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일체의 신분이 보 장된다.

제30조 (학생회장의 업무 및 권한) <개정 2014. 9. 18.>

- ① 학생회장은 본회의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진다. <개정 2022. 3. 31.>
 - ② 학생회장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학생총회, 단학대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④ 학생회장은 각 집행국장과 집행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진다. <개정 2014. 9. 18.>
 - ⑤ 학생회장은 집행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9. 18.>
 - ⑥ 삭제 <2014. 9. 18.>
- ⑦ 학생회장은 학생총회, 단대 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4, 9, 18,> <개정 2022, 3, 31,>

제31조 (학생회장의 의무) <신설 2015. 3. 20.>

- ① 학생회장은 본회가 제2조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3. 31.>
- ② 학생회장은 차기 정·부학생회장, 집행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범대 학생 회비를 예비비 명목으로 최소 30만 원 이상 남겨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3. 31.>
- ③ 학생회장은 차기 학생회장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의무는 차기 학생회장 임기 시작 한 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 3. 31.>
 - 1. 2학기 사범대 학생회비 결산안 및 증빙자료
 - 2. 정·부학생회장 및 집행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제반 업무 자료
- ④ 학생회장은 제69조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에 의거하여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가 구성되었을 때,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인계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2. 3. 31.>

제7장 집행위원회

제32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에 근거하여 학생회 사업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실질적인 집행기구이다. <개정 2022. 3. 31.>

제33조 (구성) <개정 2014. 9. 18.>

- ① 집행위원회는 당해 학생회장이 임명하고 의결기구에서 인준을 받은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 9. 18.>
- ②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집행국을 둘 수 있다. 학생회장은 집행국을 구성하여 의결기구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14. 9. 18.>

제34조 (선출) <개정 2014. 9. 18.>

- ① 집행위원장 및 집행국장은 학생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개정 2014. 9. 18.>
 - ② 삭제 <2014. 9. 18.>

제34조의 2 (권한) <신설 2014. 9. 18.>

- 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② 학생회비 및 학생회 재산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 ③ 기타 중요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집행위원은 본인의 지위 및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서만 단학대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발 언권을 가진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2, 3, 31.>
 - ⑤ 운영위원회, 기타 회의체에 참석하여 속기록을 작성한다. 〈신설 2019. 9. 10.〉

제35조 (특별부서)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시적인 집행국 이외의 특별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9. 18.>

제8장 과/반 학생회

제36조 (구성 및 운영) 과/반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은 각 과/반별 학생회칙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제36조의 2 (지위) <신설 2014. 9. 18.>

과/반 학생회는 각 학생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최고 자치 기구이다.

제9장 동아리 및 자치단위

제37조 (정의) 본 회칙의 동아리 및 자치 단위란 사범대 학부생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및 자치 단위를 말한다.

제38조 (권리) 동아리 및 자치 단위는 회원 모집의 권리,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 사범대 학생회와 예산자치위원회에 활동 지원을 요청할 권리, 운영위원회와 단학대회에서 발언권을 얻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9. 3. 25.>

제39조 (대표) 동아리 및 자치 단위들은 직접선거나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동아리 및 자치 단위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1인을 선출할 수 있다. '그에 준하는 절차'는 동아리 및 자치 단위끼리의 협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1. 3. 4.>

제40조 (등록) 동아리 및 자치 단위들은 사범대 학생회의 동아리 및 자치 단위 DB 구축을 위한 동아리 등록에 임한다. 자세한 사항 및 절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 9. 18.>

제41조 (동아리방) 동아리 및 자치 단위들은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수 있다. 동아리방 배정은 동아리 연석회의에서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19. 3. 25.>

제42조 (시행세칙) 삭제 <2014. 9. 18.>

제10장 단대학생회 산하 기구

<개정 2019. 3. 25.>

제43조 (구성)

- ① 단대학생회 산하 기구(이하 '산하 기구')는 사범대학생회의 연속성과 관계없이 해당 업무를 지속해서 수행하기 위한 상설집행기구이다. <개정 2022. 3. 31.>
- ② 산하 기구는 제47조부터 언급된 기구로 하며, 산하 기구의 등록은 제13장에 따른 회 칙개정을 통해 제48조 밑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 ③ 산하 기구는 기구의 장 1인을 둔다.
 - ④ 산하 기구는 각 기구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다.

제44조 (해산) 단학대회는 산하 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발의와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그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산하 기구는 그 등록이 취소되며 관련 조항이 삭제된다. <개정 2019. 3. 25.>

- 1. 사범대학생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2. 단학대회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3. 대학본부 및 기타 외부세력과 협력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본회에 현저한 해를 끼치는 경우
 - 4. 산하 기구 자체적으로 해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제45조 (지위) 산하 기구의 장은 집행위원회 국장에 준하는 위상을 지니며, 필요시에는 운

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제46조 (보고 및 의무)

- ① 산하 기구의 장은 단학대회의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1. 활동 구성원 명단 등 기구 구성 현황
 - 2. 예산안 및 결산안
 - 3. 사무실 및 시설물, 소유물 보유 현황
 - 4. 사업 내역 및 사업계획
- ② 산하 기구의 장은 3, 6, 9, 12월의 첫 번째 운영위원회에 전항 각 호의 사항에 준하는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5.>
- ③ 산하 기구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9. 3. 25.>

제47조 (찾아가는 교육 활동)

- ① '찾아가는 교육 활동(이하 '교육 활동')'은 사범대의 다양한 과/반 학우들과 함께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직접 수업을 구성하면서, '참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정 2019. 3. 25.〉
- ② 교육 활동은 사범대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대안 수업 및 교육 봉사 활동으로서 대학의 자치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자치 문화 확립에도 그 의의가 있다.
- ③ 교육 활동은 그 운영에 있어 운영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 활동 본 기간 기획 및 진행에 대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활동한 다. <개정 2019. 3. 25.>
- ④ 교육 활동 국장은 교육 활동 내부 기준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하고 교육 활동 국장 과 교육 활동 재정/회계 담당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개정 2019. 3. 25.>
- ⑤ 사범대 학생회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9. 3. 25.>
- ⑥ 교육 활동은 본 기간 종료 후 제46조의 ②항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고, 교육 활동 본 기간에 대한 보고 및 결산 심의를 받는다. 운영위원회는 심의한 교육활동의 결산안을 단학대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9. 3. 25.>
- ⑦ 그 외의 운영에 대한 원칙은 '찾아가는 교육 활동 운영세칙'을 따른다. 단, 운영세칙은 단대학생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장 선거

제48조 (선거) 본회는 정·부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방법에 입각한 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19. 3. 25.>

제49조 (시기) 매 학년도 학생회장 선거는 직전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한다. 단, 단학대회

에서 선거 시기를 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0.>

제50조 (유권자) 투표권은 투표일 당시 자격이 인정되는 본회의 회원에게 주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제51조 (선거관리위원회) <개정 2014. 9. 18.>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 3. 20.>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15. 3. 20.>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15. 3. 20.>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15. 3. 20.>
- ⑤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는 선관위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관위의 유일한 의사결정기구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5. 3. 20.>
 - 1. 선관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의 소집 요구
 - 2. 선관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 3. 선본장연석회의의 제청
- ⑥ 선거관리위원회 전원회의는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 9. 18.> <개정 2015. 3. 20.>
-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 결정, 선거 업무 수행, 선거 시행세칙 해석, 학생회칙·선 거 시행세칙·선관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한 징계, 기타 선거에 필요한 사 항의 심의 및 의결을 실시한다. <신설 2014. 9. 18.>
-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대 학생회 선거를 관리함과 동시에 총학생회 선거에서 단대 책임 자 역할을 맡는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2. 3. 31.>

제52조 (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에 미리 선거공고를 한다.

제53조 (후보자 등록) 후보자는 당해 사범대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서 후보등록 마감 직전까지 회원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자로 한다. <개정 2019. 3. 25.>

제54조 (당선자 확정) <개정 2015. 3. 20.>

- ① 재적 선거인단 과반수의 투표로 다수득표자 1인이 당선된다. 단, 두 선본 이상의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를 한다. <개정 2022. 3. 31.>
- ② 재투표 결과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다만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재투표한다. <개정 2022. 3. 31.>

제55조 (보궐선거) <개정 2015. 3. 20.>

① 정 · 부학생회장 유고 시 이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유고가 확정된 날로부

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1. 3. 4.>

- ② 사범대 학생회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다음 해 3월 중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신설 2021, 3, 4,>
-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부터 당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 3. 4.>

제56조 (선거 시행세칙) 선거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15. 3. 20.>

제12장 재정

제57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및 기타 수익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5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1기 12월 1일부터 2월 28일(윤년 시 29일)까지, 제2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3. 25.>

제59조 (예산 편성) <개정 2022. 3. 31.>

- ① 본회의 재정관리자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의 협의와 단학대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② 사범대 학생회비의 20%를 사범대 예산자치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 ③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학생회 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 경상비에 대해서만 지출할수 있다. 단, 이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2. 3. 31.>
- ④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의 경우 적법한 절차로 본다. <개 정 2022. 3. 31.>
 - 1.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2.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단학대회 소집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사업을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한 경우.
- ⑤ 일반회계 제1기 예산안은 12월 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 ⑥ 본회의 집행위원회는 전항의 예산을 당해 12월 31일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60조 (결산보고)

- ① 본회의 결산은 재정관리자가 담당하며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단학대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9. 3. 25.>
- ② 학생회장은 매 학기 단학대회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대중적으로 공고해 야 한다. <개정 2019. 3. 25.>
 - ③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정관리자는 재정 상태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 (예산자치기금)

- ① 사범대 학생회는 매 학기 사범대 학생회비의 20%를 사범대 예산자치기금의 재원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10% 내지 30%의 범위 안에서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 범위를 넘어서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2. 3. 31.>
- ② 사범대 예산자치기금 재원의 분담은 매 학기 단학대회에서의 사범대 예산자치기금 인준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별도의 계좌로 전액 입금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개정 2019. 3. 25.>
- ③ 사범대 자치단체가 벌이는 대중적인 사업 또는 사범대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 중 학생사회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사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 ④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심의에 따른 집행은 집행위원 중 1인이 담당한다. <개정 2019, 3, 25.>
- ⑤ 실질적인 운영원칙의 수립을 위해 '사범대 예산자치기금 운영세칙'을 두며 이는 운영 위원회의 인준과 공표를 통해 효력을 발생하거나 갱신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매달 사범대 예산자치기금의 사용 내역을 대중적으로 공고한다. 또한, 매 학기 단학대회에서 그 활동을 보고한다. <개정 2019. 3. 25.>

제62조(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 <신설 2022. 3. 31.>

- ① 인준된 예산안에 따른 집행이 학생회비가 아닌 해당 기구 구성원의 사비로 진행된 경우 집행기구는 해당 회원에게 집행된 사비를 환급해야 한다.
- ② 각 기구의 위원장 혹은 재정관리자는 사비 지출에 대한 환급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야 한다.
 - ③ 단, 환급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④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제13장 학생회칙 개정

제63조 (발의) 회칙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조항 중 하나를 갖추어 학생총회 혹은 단학 대회의 개회 3일 전으로 한다. <개정 2019. 3. 25.> <개정 2021. 3. 4.> <개정 2022. 3. 31.>

- ① 학생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될 수 있다. <개정 2021. 3. 4.>
- ② 학생회칙 개정안은 회원 10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될 수 있다. <개정 2021. 3. 4.>
- ③ 학생회칙의 개정안은 단학대회 재적인원 1/5 이상의 연서로 발의될 수 있다. <개정 2021. 3. 4.>

제64조 (의결)

- ① 학생회칙 개정안은 단학대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할 때는 단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학생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거나 전체투표에 부친다.

제65조 (공표)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3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개정안은 당해 단학대회 폐회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14장 사범대 학생회 인수위원회

<신설 2019. 09. 10.>

제66조 (구성 및 해소) 사범대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당선된 정·부학생회장 후보자가 구성하고, 신임 학생회장단의 임기 시작과 함께 해소된다.

제67조 (업무) 사범대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사범대 학생회 집행위원회 인선에 관한 일정 및 제반 업무
- ② 전대 학생회장단 또는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의장단으로부터의 업무 인수인계

제68조 (인선)

- ① 사범대 학생회 인수위원회는 집행위원회 구성 전까지 원활한 업무 인수 및 업무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인선 규정을 둔다.
 - 1. 인수위원장은 당선된 정학생회장 후보자가 한다.
- 2. 학생회장은 본인을 포함하여 집행국장 이상의 직책을 맡은 3인 이상을 사범대 학생회 인수위원으로 지명해야 한다.
 - 3. 당선된 정·부학생회장 후보자는 최소 3인 이상의 인수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 ② 당선된 정학생회장 후보자는 당선 이후 5일 이내에 사범대 학생회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학생회장은 후보자의 당선 직후 운영위원회에서 인수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15장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제69조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 ① 본 회칙의 제49조의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및 제55조에 따른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각 과/반 대표자들 및 동아리연합회장은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개정 2019. 9. 10.> <개정 2021. 3. 4.>
- ②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는 본 회칙 제5장의 운영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 3. 25.> <각호신설 2019. 9. 10.>
 - 1.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의 정식 명칭은 사범대 학생회 직무대행 0000(해당년도) 사

범대대표자연석회의로 한다. 당해 12월 1일부로 다음 해의 해당년도를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 2.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운영위원회로 한다.
- 3. 집행위원회의 명칭은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집행위원회로 한다.
- ③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내에서 의장을 호선한다. <각호신설 2019. 9. 10.>
 - 1. 의장은 상설직으로, 운영위원 중 1인으로 한다.
 - 2. 부득이한 경우 부의장 1인을 호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삭제 2021. 3. 4.>
- ⑤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는 이듬해 보궐선거의 선관위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1. 3. 4.>

제70조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의장)

- ①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본 회칙 제6장의 정·부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 9. 10.>
- ②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의장 및 부의장이 운영위원회에 모두 불참하는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 ③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의 의장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며 사범대대표자연석회의 집행위원회는 본 회칙 제7장의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개정 2019. 9. 10.>

부칙

제1조 본 회칙은 회원 전체투표 및 단학대회에 의하여 제정되며 3일 이내에 학생회장이 공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본 회칙은 기존회칙이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